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4.26. 일부개정, 2022.10.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별표 3)

1) 관계인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 00. ~ 0. 0.)

3) 행정규제 : 규제 해당없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50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이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제2호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1회	2회	3회	4회이상			1회	2회	3회	4회이상
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0	400	500	500	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 제1호	200	400	500	500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제2호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대응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7562